

< 정 오 표(1)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- 유리MKF웰스토탈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- 유리스몰뷰티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- 유리코리아성장&배당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6.07.30

3. 주요 정정사항 :

-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 및 환매 기준시점 변경(15시→15시30분)

[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5조(판매가격)	① (생략)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자투자신탁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 (현행과 동일)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투자신탁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2영업일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2영업일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제28조(환매연기)	①~⑥ (생략)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	①~⑥ (현행과 동일)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

	<p>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(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.</p> <p>2.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</p>	<p>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.</p> <p>2.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</p>
--	--	--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<p>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	<p>가. 매입</p> <p>(2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.</p> <p>(나)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.</p> <p><별첨1> 변경 전 그림 참고</p>	<p>가. 매입</p> <p>(2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.</p> <p>(나)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.</p> <p><별첨1> 변경 후 그림 참고</p>
<p>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	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환매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환매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<별첨2> 변경 전 그림 참고</p> <p>(5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p>	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환매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환매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<별첨2> 변경 후 그림 참고</p> <p>(5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p>

	<p>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(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	<p>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
--	---	---

<별첨1>

- 변경 전



- 변경 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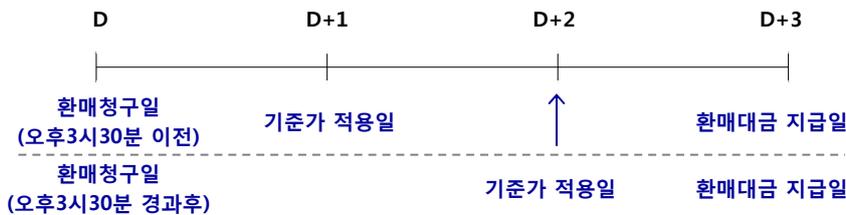


<별첨2>

- 변경 전



- 변경 후



< 정 오 표 (2)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트리플알파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
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6.07.30

3. 주요 정정사항 :

-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 및 환매 기준시점 변경(15시→15시30분)

[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5조(판매가격)	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<u>15시</u>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(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)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	<p>①~⑤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<u>15시 30분</u>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(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)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
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<p>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3영업일(<u>15시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</p> <p>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(<u>15시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~④ (생략)</p>	<p>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3영업일(<u>15시 30분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</p> <p>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(<u>15시 30분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~④ (현행과 동일)</p>
제28조(환매연기)	<p>①~⑥ (생략)</p> <p>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</p>	<p>①~⑥ (현행과 동일)</p> <p>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</p>

	<p>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(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 <p>2.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</p>	<p>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 <p>2.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</p>
--	---	---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<p>가. 매입</p> <p>(2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.</p> <p>(나)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.</p> <p><별첨1> 변경 전 그림 참고</p>	<p>가. 매입</p> <p>(2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.</p> <p>(나)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.</p> <p><별첨1> 변경 후 그림 참고</p>
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환매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환매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<별첨2> 변경 전 그림 참고</p> <p>(5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</p>	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환매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환매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<별첨2> 변경 후 그림 참고</p> <p>(5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</p>

	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(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	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
--	---	---

<별첨1>

- 변경 전



- 변경 후



<별첨2>

- 변경 전



- 변경 후

